

수원지방법원 2024. 3. 21 선고 2023가단557887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3. 7.

판 결 선 고 2024. 3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2,808,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5. 4.부터 2023. 11. 14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(‘채권자’는 원고로, ‘채무자’는 피고로 본다).2. 적용법조: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진현섭

별지

청 구 원 인

1. 채권자는 '철강재 가공 및 제조업, 철강재 무역 및 도·소매업 등'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, [D] 주식회사(주채무자)는 채권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약정으로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인데 그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신청일 현재 아래 청구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남아 있고, 채무자 [C] 는 주채무자가 구매한 물품대금의 결재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 연대보증인입니다.

아 래

1) 판 매 연 월 일 : 2023. 1. 17.

판 매 물 품 명 : 철근H10 × 8M × 6

수 량 및 단 가 : 5,646개 × 1,060원

판매(약정)금액 : 금6,583,236원(VAT 포함)

2) 판 매 연 월 일 : 2023. 1. 17.

판 매 물 품 명 : 철근H13 × 8M × 10

수 량 및 단 가 : 9,550개 × 1,055원

판매(약정)금액 : 금11,082,775원(VAT 포함)

3) 판 매 연 월 일 : 2023. 1. 17.

판 매 물 품 명 : 철근H22 × 8M × 66

수 량 및 단 가 : 65,802개 × 1,055원

판매(약정)금액 : 금76,363,221원(VAT 포함)

4) 판 매 연 월 일 : 2023. 2. 4.

판 매 물 품 명 : 철근H10 × 8M × 15

수 량 및 단 가 : 14,115개 × 1,060원

판매(약정)금액 : 금16,458,090원(VAT 포함)

5) 판 매 연 월 일 : 2023. 2. 4.

판 매 물 품 명 : 철근H13 × 8M × 6

수 량 및 단 가 : 5,730개 × 1,055원

판매(약정)금액 : 금6,649,665원(VAT 포함)

6) 판 매 연 월 일 : 2023. 2. 4.

판 매 물 품 명 : 철근H16 × 8M × 1

수 량 및 단 가 : 936개 × 1,055원

판매(약정)금액 : 금1,086,228원(VAT 포함)

7) 판 매 연 월 일 : 2023. 2. 4.

판 매 물 품 명 : 철근H22 × 8M × 8

수 량 및 단 가 : 7,976개 × 1,055원

판매(약정)금액 : 금9,256,148원(VAT 포함)

8) 판 매 연 월 일 : 2023. 2. 24.

판 매 물 품 명 : 철근H10 × 8M × 10

수 량 및 단 가 : 9,410개 × 1,060원

판매(약정)금액 : 금10,972,060원(VAT 포함)

9) 판 매 연 월 일 : 2023. 2. 24.

판 매 물 품 명 : 철근H13 × 8M × 8

수 량 및 단 가 : 7,640개 × 1,055원

판매(약정)금액 : 금8,866,220원(VAT 포함)

10) 판 매 연 월 일 : 2023. 2. 24.

판 매 물 품 명 : 철근H22 × 8M × 14

수 량 및 단 가 : 13,958개 × 1,055

판매(약정)금액 : 금16,198,259원(VAT 포함)

11) 판 매 연 월 일 : 2023. 3. 8.

판 매 물 품 명 : 철근H22 × 8M × 3

수 량 및 단 가 : 2,991개 × 1,055

판매(약정)금액 : 금3,471,056원(VAT 포함)

운 임 : 금132,000원(VAT 포함)

12) 판 매 연 월 일 : 2023. 3. 10.

판 매 물 품 명 : 철근H22 × 8M × 0.5

수 량 및 단 가 : 499개×1,055

판매(약정)금액 : 금579,090원(VAT 포함)

운 입 : 금110,000원(VAT 포함)

∴ 위 청구금액의 합계 : 금72,808,048원

판매대금의 결제방법 : 당월 말 마감 청구 후 익월 30일내 현금 결제

2. 그런데 채권자의 계속된 변제 최고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인 D 주식회사는 위 물품 대금에 대한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, 이에 채권자는 이 사건 채무자에게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였으나 채무자도 잦은 약속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하므로 결국 채권자는 위 물품대금 및 관련된 보증채무금을 한 톨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3. 따라서,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72,808,048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날의 다음 날인 2023. 5. 4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자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.

